

昭和五十四年度 林構事業中央研修會 〔特別講演〕

新 森林政策追求

— 森林政策革命 —

京都大學農學部 教授 岸根卓郎

本報告書는 京都大學農學部教授 岸根卓郎 博士가去年七月二五, 六兩日에 東京에 있는 日本林構事業中央研修會에서 行한 特別講演의 内容인데, 同博士는 새로운 時代를 指向한 科學的인 새 林政學을 提唱하는 有名한 教授로서 平素 尊敬해 오던次, 同 教授의 涼解를 얻어서, 簡略하나마 이를 紹介하여 今後의 韓國林政에 새 示唆를 주었으면 多幸일까 생각되어 이 譯文을 韓國林學會誌에 寄稿하는 바랍니다.

西海開發株式會社長 申載尚

I. 序 言

오늘 아침 나는 新幹線車中에서 「White Hole」이라고 하는 새 宇宙論을 紹介한 書籍을 읽으면서 京都에서 東京으로 왔습니다.

宇宙에는 「Black Hole」이라 부르는 所謂, 死星을 吸込하는 宇宙의 吸込口가 있다는 것은 기왕에 널리 알려진 事實이지만 最近에 와서 이와는 反對로 「White Hole」이라고 하는 新星을 生出하는 새로운 宇宙의 噴出口가 있다고 하는 것이 問題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新旧兩星의 世代交替로 因하여 宇宙는 쉬지 않고 進化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序頭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茫漠한 宇宙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現象, 即, 吸込口가 있으면 噴出口가 있듯이 世上의 모든것은 반드시 “十”가 있으면 “一”가 있고, 陽이 있으면 陰이 있어서 비로소 完全한 調和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組織이 構成 된

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現實에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딱딱”한 “物体”가 있는限, 그 對極에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드러운 마음”에 關聯되는 그 무엇인가가 存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兩者는 반드시 調和를 이루고 있으며, 또 調和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이 理致를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現象은 우리가 人間과 森林과의 關係를 考察할 때 그것을 單只 하나의 物体로만 보지 말고 “마음”에도 關聯되는 問題로 把握하여야 한다는것을 示唆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오늘날 森林이 가지고 있는 “物”에 關한 “Hard”한 經濟機能面과 “Soft”한 “마음”에 關한 公益機能面의 兩面을 同時에 調和시킬 수 있는 새로운 “未來의 森林政策”에 對하여 自身의 見解를 明白히 提示하고자 합니다.

II. 森林政策의 現在와 未來

조금 前에 宇宙의 進化에 對한 이야기를 했지만, 實은 人間社會도 끊임없이 進化하고 있습니다.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로, 工業社會에서 情報社會로의 變遷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現在는 工業社會니까 “物質의 再生產社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生產基盤이나 資本裝備 等의 物質的 價值가 重視 당하는 것은當然한 일입니다. 即, 工業社會는 “物質의 價值重視의 社會” 그러니까 “Hard”한 社會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只今 工業社會로 移行하면서 物質的으로는 大端히 豐饒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知惠를 가진 人間이란, 物質의 豐饒만으로는 到底히 滿足할 수 없읍니다. 그 以上的 高度의 慾求, 即, “마음”에 關係되는 精神的 慾求를 追求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社會를 일컬어서 情報社會 또는 知識社會라 말하는 새로운 社會인 것입니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物質의 再生產」보다는 物質을 創出하는 「知識의 再生產」이 더욱 重視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닥아올 새로운 社會에서는 人間에게만 주어진 「知的歡喜」, 그러니까 「人間의 知的個性」을 尊重하는 “人間性 重視의 社會” 다시 말하면, 그 根底에 있는 人間의 “마음”에 關係되는 “Soft”한 社會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今後의 새로운 森林政策도 이러한 社會進化에 適合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은勿論입니다. 그래서 그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나는, 現在社會와 未來社會의各各 서로 영겨있는 關係를 파헤쳐서 새 森林政策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自身의 見解를 分明히 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本講演의 第一의 題目을 「森林政策의 現在와 未來」라고 한 것도 그러한 뜻에서 연유된 것임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이것을 具體的으로 設明한다면, 現在의 工業社會에서는 產業活動이 活發化하니까 森林에 對하여 建築用材, 製紙用材, 合版用材, 包裝用材 等의 經濟的인 社會要請이 激增해 집니다. 이러한 要請에 應하는 것이 即, 「林業의 經濟政策」입니다. 한便, 產業活動이 活發化되면 第一 먼저 產業用水과 같은 水資源需要가 增大하고, 다음으로 大氣汚染 等의 產業公害가 發生하고, 第三으로는 亂開發에 依한 國土의 荒廢가 오고, 第四로 都市化에 依한 生活環境의 惡化 等等이 繼續問題로 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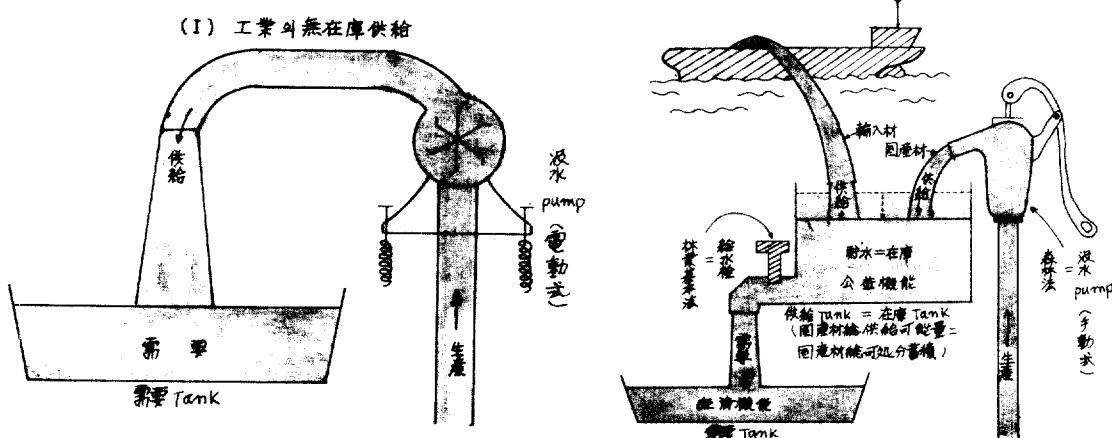
場하게 됩니다. 그런데, 第五로는 物質的 豐饒로 生活水準이 向上하여 心的인 余裕로 慾求 또한 增大해지게 마련입니다. 이 때 이 工業化한 社會와 森林과의 關聯은 먼저 말한 第一의 森林의 水資源涵養機能, 第二의 森林의 大氣淨化機能, 第三의 森林의 土砂流出防止機能, 第四의 森林의 保健, 休養機能이 그리고 第五의 森林의 情操教化 機能 等이 각각 그 需要나 必要性에 따라서 크게 貢獻하고 있습니다. 勿論, 이들의 貢獻은 그 全部가 森林이 가지고 있는 “Soft”한 機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치 이러한 機能의 確保政策을 「林業의 公益政策」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森林의 機能에 對한 社會의 要請은 過去社會에서 그다지 크게 우리가 經驗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物의 豐饒에서 보다는 마음의 豐饒를 慾求하는 脫工業 社會에로의 移行, 即 情報社會로의 社會進化에 隨伴되는 要請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林業의 公益政策이 未來社會와 連結되는 所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困難한 것은 同一森林이 이를 經濟, 公益, 兩機能을 同時에 分擔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森林의 經濟機能은 森林을 伐採함으로써만 達成되는 反面에 公益機能은 森林을 保續시키는데서만 達成할 수 있는것이니만 치 그 中 어느 한便의 社會的 要請을 重視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兩機能의 確保를 為한 二律背反 性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데도 不拘하고 現行의 日本林政은 이 二律背反性을 더욱 助成하는 듯한 法體系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圖1에 따라 設明해 봅시다.

林業과 他產業, 그 中에서도 工業과의 基本의이며 決定的인 相違點은 生產期間의 長短에 있습니다. 圖1의 汲水펌프의 例로서 說明해본다면 工業의 汲水펌프는 同圖의 (1)과 같이 新式이여서 그 效率이 매우 錳 強力電動式 펌프로 되어 있어서 需要가 있으면 곧 “스위치”를 넣는 間隔, 얼마 안가서 大量의 물이 탱크에 가득차게 된다. 勿論 이때 不必要하다면 곧 “스위치”를 끊으면 되는데 對하여 林業의 汲水펌프는 同圖 (II)에서 보는바와 같이 旧式임으로 手動式 非能率의 펌프와 같아서 只今 當場 需要가 있다순치드라도 四, 五十年 以上의 긴 晴날이 오지 않으면 需要탱크 안에다 물을 채워 넣을수가 없다. 그러니까 萬一, 林業이 工業

图 1 林業과工業의 基本的相違



과 같이 需要變化에 따라 瞬間的으로 弹力性 있게 이에 應하려면 그 途中에다 在庫탱크를 設置해 두고 常時 非能率의 手動펌프로 滿水시켜 두었다가 必要時に 給水栓을 열어서 이에 應하는 밖에 別道理가 없는 것이다. 勿論 이때도 不必要하게 되면 곧 給水栓을 막으면 되지만 이러한 事實은 即, 工業은 在庫가 必要치 않은 다시 말해서 “無在庫供給”으로 足한테 對하여 林業의 그것은 在庫가 不可欠한 所渭 “在庫供給”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林業問題를 生覺하는 데 있어서 이 以上 더 重要한 點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現行林政을 살펴본다면 森林法과 林業基本法이라는 두개法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森林法은 獨逸林政을 본따서 만든 約八十余年의 歷史를 가진 오래된 法律입니다. 그立法精神은 森林生產力의 增強과 森林資源의 維持, 培養에 두고 있습니다. 即, 먼저 “펌프”的例로 말한다면 非能率의 手動式 “펌프”的 效率을 높이고 또 便에서는 給水栓을 밖에 두고 在庫 “탱크”내의 水位를 높이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입니다. 따라서 本法은 高度로 資源保續의 法律이기 때문에 別名 ‘資源法’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對하여 林業基本法은 高度經濟成長期인 一九六十年代에 成立된 새 法律입니다. 그立法精神은 產業의 活發化에 따르는 木材需要 激增에 對應

하면서 林業과 工業間의 所得格差를 是正하고 產業으로서의 林業의 經濟的 自立을 目的으로 한 高度의 資源供給의, 產業指向의 法律입니다. 따라서 本法의 別名을 ‘產業法’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펌프”를 例로 한다면 激增하는 木材需要에 對應하여 給水栓을 크게 열 것을 目的으로 한 法律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重要한 問題는 이 兩法의 關係上 基本法이 森林法보다 上位에 있다는 點입니다. 그래서 木材의 需要가 커지면 基本法에 依하여 先 給水栓이 크게 열리게 되는 在庫탱크 내의 水位가 急降下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森林法에 依한 旧式 手動펌프를 가지고는 아무리 热心히 움직여도 이렇게 急降下하는 水位의 低下를 막아낼 道理가 없습니다. 그래서 實際的으로는 外國에서 大型船舶으로 大量의 물을 運搬해다가 在庫탱크에다 마구 퍼부어 넣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것이 바로 現下問題로 되고 있는 外材輸入의 것입니다. 이 外材輸入 德分에 요지음 在庫탱크 내의 水位는 急降下하지 않고 있어서 他產業用材의 需要를 瞬間의 면서도 弹力性 있게 供給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側面에서 본다면 萬… 外材輸入이 안 되었다면, 在庫탱크의 물(日本의 森林資源)은 별 써 枯渴되었을 것이며 林政은 完全히 破綻될 것이分明합니다.

III. 新しい 森林政策의 追求

— 森林政策革命 —

以上에서 말씀드린 바를前提로 해서 다음에 올未來社會에 있어서의 “새로운森林政策”에對하여生覺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從來의 生覺에 있어서 본다면 “森林政策革命에로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林業의 經濟政策 —

以下 林業의 經濟政策을 機能別 經濟政策으로 나누어서 「資源 生產政策」, 「流通 消費政策」, 「構造 分配政策」과 手段別 經濟政策으로서의 「財政 金融政策」으로 分離 說明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 資源 生產政策

本 政策은 森林資源을 保續, 培養하여 그 素材 生產性을 如何히 높이는가에 關한 政策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時間關係上 後者の 生產政策에만 言及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林業의 生產性이란 林業의 勞動生產性을 말하며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林業의 生產所得 Y 를, 林業의 勞動人口 N 으로 나눈 값 Y/N 을 뜻한다. 即, 林業勞動者 一人當의 生產所得인 것이다. 이 林業의 勞動生產性 Y/N 는 林業資本 K 를 媒介로 해서 다음과 같은 式으로도 表示됩니다. 即, $Y/N = K/N \cdot Y/K$ 여기서 右邊의 K/N 은 林業資本 K 를 林業勞動人口 N 으로 나눈 林業勞動者 一人當의 資本量, 即, 林業勞動者 한 사람이 몸에 裝備한 資本量, 그러니까 林業의 資本裝備率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한便 Y/K 는 林業의 生產所得 Y 를, 資本量 K 로 나눈 林業資本 一單位當 所得高, 即, 林業의 資本生產性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면 式에서 林業의 勞動生產性의 크기는 林業의 資本裝備率과 林業의 資本生產性의 크기에 依해서決定된다는 것이 理論的으로 證明됩니다.

그렇다면 林業의 資本裝備率의 크기란 어떤것일가 하고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即, 林業勞動者가 몸에 지닌 裝備資本인데 이것은 고작, 낫, 삽, 곡괭이, 톱에 不過하고 좀 近大化했다는 것이 機械톱, 刮拂機, 索道 等일 것이다. 이것을 工業勞動者에 그것과 比較한다면 問題도 안 되리만치 貧弱한 것이다. 따라서 林業의 資本裝備率이란 極端의으로 矛다. 한便 林業의 資本生產性도 林業機械가 幼稚하니까 따라서 그 生產性도 工

業機械에 比해서 全然 問題가 되지 못하는 形便이다.

그러니까 林業에 있어서는 資本裝備率 K/N 도 資本生產性 Y/K 도 다같이 매우 얕으니까 그 相乘值인 勞動生產性 Y/N 가 얕다는 것은 當然한 結果입니다. 그렇다면 林業의 生產政策으로서는 이와 같이 얕은 林業의 資本裝備率과 資本 生產性을 어떻게 해서 高度化하는가의 政策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① 資本裝備率의 高度化 政策

林業의 資本裝備率을 高度化하려면 「勞動手段의 逤回化 政策」이 必要합니다. 여기서 勞動手段의 逤回化라고 하는 뜻을 알기쉽게 말하자면 될 수 있는限り 高度로 발달한 機械를 採用한다는 뜻이 된다. 낫이나 도끼, 톱 등과 같은 單純한 器具가 아니고 植栽에서부터 撫育, 伐採, 集材, 運材에 이르기까지의 一貫作業이 萬能한 高度의 機械를 採用하는 政策입니다.

② 資本生產性의 高度化 政策

林業의 資本生產性을 高度化하려면 「勞動對象의 逤回化 政策」이 必要합니다. 여기서 勞動對象의 逤回化란 可能한限, 손이 많이 간 高級生產品을 만든다는 뜻인데 그래야만 各 生產過程에서의 附加價值, 即, 追加利潤을 높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將次는 原木에서 石油製品의 代替品까지도 生產하게 될 것입니다. 별씨 이 方面은 理論的으로 可能한 단계에 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要컨대 未來林業에 있어서는 “林業, 林產一貫生產”을 指向함으로써 附加價值를 높여서 資本生產性을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③ 勞動組織의 高度化 政策

그밖에 또 林業의 勞動生產性을 높이려면 「勞動組織의 逤回化 政策」이 必要합니다.

여기서 労動組織의 逤回化라는 것은 한 사람의 勞動者가 植林에서부터 撫育, 伐採, 集材, 搬出에 이르기까지의 全作業을 一貫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分業화하는 것입니다.

大体로 分業이란 「同一人이 同一場所에서 同一한 作業을 하는 동안에 熟練度가 높아져서 生產能率을 월등히 높이는 것」이라고 定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定義에 따르면 林業에서는 嚴密히 따져서 分業이란 成立이 되지 않습니다. 그 理由는 아시는 바와 같이 林業에서는 그 生產期間이 몇 十年

씩 걸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分業의 形態를 좀 바꾸어서「社會的 分業」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林業도 分業이 可能해 진다는 것입니다. 即, 社會的組織, 例컨데 森林組合과 같은組織이 各種作業의 專門勞動部門을 두고 오늘은 金氏의 山에서 伐採를 하고 내일은 李氏山에서 伐採를 하는 式으로 늘同一人이同一作業에連續的으로從事하도록 한다면 場所는 移動된다고 해도同一人이同一作業을繼續하여 그熟練度가 높아져서 월등한 生產性增大로 分業의效果를期待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森林組合은 이렇게 되면 훌륭한 社會的分業의先驅者的役割을하게되는 것입니다.

(2) 流通, 消費政策

다음은「林業의流通,消費政策」에對하여說明하겠습니다.

① 現物流通을 情保流通으로 轉換하는 政策

貨物中에서도 가장大型이고重量物인木材를 그하나하나의欲을定하기爲하여現물을一一히 다루는式의去來法即,現物流通은 複雜時代의으로 뒤떨어진旧法이되고 말았다.用途別 또는特殊材의規格화를피해 가지고 그見本으로價格을決定해서電話 한通으로去來가 이루어지는一般商品과도같이“情報流通”으로그政策을轉換해야만됩니다.

이러한政策轉換으로말미암아비로소木材流通은近大化되고合理化되는것입니다.勿論이때全國의in情報組織網의開設이必要합니다.

② 生產一, 加工一, 消費의 一貫大量流通政策

現在와같이複雜하고 가느다란「狹域,分散,少量,多品目去來의小規模流通」을斫고짧은「廣域,一括集荷,大量去來의大規模流通」으로轉換하고거기다가먼저說明한生產政策中「資本生產性의高度化政策」을한데묶어서「生産一加工一消費의一貫大量流通政策」을指向하지않으면안됩니다.

③ 需給均衡과價格安定政策

木材의需給을均衡화해서木材價格을安定화하기爲한政策입니다.私論의表現方法으로말한다면「木材의在庫調整政策」입니다.또한번여기서먼저의圖1의(II)를보아주시요.이그림의in內의물의流入量과在庫탱크에서의물의流出量을恒時均衡화시켜서水位를維持하고그물의흐름을安定화시키기爲한政策입니다.다시말

하면手動式펌프를作動하는것과給水栓을얼마만큼열어주는가하는것을調整해서는탱크內의適正水位를維持하는것이「木材需給의均衡化政策」이고이로말미암아서물의흐름을安定화시키는것이「木材價格의安定化政策」이라고하는것입니다.

國內林業再生產의價格政策

—外材輸入政策—

이政策은지금말한「木材價格의 安政政策」의一環인데特히外材輸入과의關連政策이라는뜻에서現在 가장 important政策의 하나라고 할수있습니다.그러나그具體的인것을말하기前에私論인“木材價格形成論”을먼저曉解두지않으면안되겠습니다.圖2를參照해주세요.

아시는바와같이一般商品價格은市場에서의需給量이均等화하는데서決定됩니다.即,市場需給曲線D와市場供給曲線S와의交點에서그財物의價格이決定됩니다.이것은近代經濟學의基礎理論이지요.그런데私論인「木材價格形成理論」은그것과는매우다른것입니다.이 다르다고하는점은木材라하는것은“在庫供給”이니까圖2에서보는바와같이在庫供給量을表現하는特殊한供給曲線<S가普通있는市場供給曲線S以外에正한줄이必要한데서비롯됩니다.나는이<S線을“總供給曲線”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더풀어서說明하자면<S線은國產材의「總可處分蓄積」이되고따라서「總供給可能曲線」이라고理解해주면됩니다.

이렇게生覺할때이그림의原點을通過하는價格軸과市場供給曲線에의해서찌안기는部分S는森林所有者가實地로市場에供給한木材의市場供給量을表示한것이지만,反對側의總供給曲線과市場供給曲선이끼고있는部分S'는森林所有者가市場供給을保留하고있는「留保供給量」을表示하고있는것입니다.그런데이留保供給量은보기에따라서는森林所有者自身이그價格으로는市場에는내지않고自己自身의需要에充當하는것이오히려낫다고生覺하는留保需要量이라고도할수있는것이니까結局“留保共給量”은“留保需要量”이라고보아도無妨한것이됩니다.

그렇다면林業에서는진짜木材需要量이란一般消費者의市場需要量D와森林所有者自身의留保

圖 2. 木材價格形成理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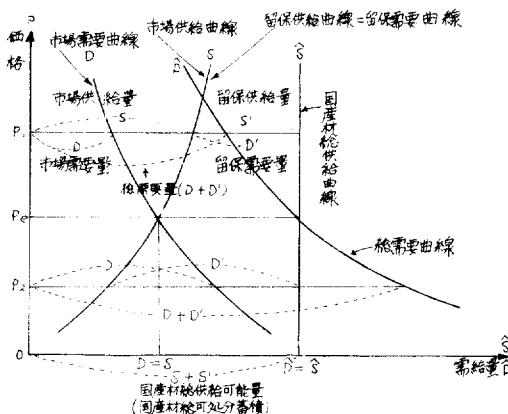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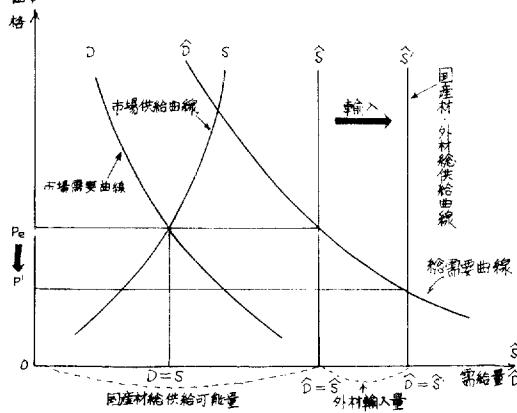


圖 3. 木材價格形成與外材輸入



需要量 D' 와의 합계需要量 ($D+D'$) 가 된다는 뜻이 되는 要點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온 이 합계需要量을 表示하는 曲線을 “總需要曲線”이라고 부릅니다. 圖 2 의 <D曲線이 바로 그것입니다.

以上에서 말한것을 理論的 根據로 한다면 木材價格形成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매우 明快하게 說明됩니다. 即, 一般財의 價格은 經濟原論에 말하듯이 市場에 實地 나타나는 市場需要曲線 D 와 市場供給曲線 S 와의 均等點에서 決定됩니다. 이에 對해서 木材의 價格은 圖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一般財의 例와 같이 市場需・給曲線 D 와 S 와의 均等에서 價格이 決定되지만 그와 同時に 市場에는 實地로 나타나지 않은 森林所有者自身的 留保需要量 D' 까지도 包含한 總需要曲線 <D와 一般財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은 總供給曲線 <S 와의 均等되는 데서도 價格決定이 이루어진다는 색다른 點이 있는 것입니다.

이 點이 바로 私論의 「木材價格形成論」이 「一般財의 價格形成論」과 크게 다른것인데 이것은 林業政策을 生覺하는데 있어서 이보다 더 重要한 知見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點을 잘 理解해 준다면 現在 우리가 外材輸入을 하는데 있어서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아 깨끗하게 解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圖 3

을 보아 주시요.

木材의 在庫供給에 있어서 木材의 輸入이란, 總供給曲線의 $<S \rightarrow <S'$ への 進行을 뜻하는 것인지만 $<S$ 曲線이 이렇게 右側으로 進行하게 되면, 國產材의 市場需・給曲線 D 와 S 에는 何等의 變化가 없다손치드래도 圖 3 에서 보는바와 같이 $P_e \rightarrow P'$ 으로 一方的으로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反對로 外材의 輸入量이 減少하게 되면 國產材의 市場需・給曲線에는 何等의 變化가 없어도, 木材價格은 一方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即, 在庫供給에 있어서는 木材價格이란 國產材의 需給量에는 何等의 變化가 없어도 外材의 輸入量만으로도 一方的으로 價格決定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在庫供給下에서는 木材貿易의 自由화를 許容하면 木材의 價格形成은 “外材主導型의 價格形成”이 안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격거야하는 外材輸入에 따르는 問題가 生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在庫供給下에서는 林政에서 外材輸入을 許容하는限, 必然的으로 外材主導型의 林政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 이것이 바로 現行林政의 混迷를 가져오는 一大原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事實을 二次大戰後의 木材價格 政策面에

서 그 變遷狀況을 立證한다면 다음과 같읍니다.

④ 外材輸入의 本格化 以前의 木材價格政策

이 時期는 昭和 三十六年 以前, 即, 아직 外材輸入이 本格化하지 않던 時期니까 木材의 總供給曲線 $< S$ 는 거의 右側으로 移動하지 않고 있어서 事實上 不變으로 보아도 좋다. 따라서當時의 木材價格은 國產材만의 市場需・給曲線 D와 S로 一方的으로 決定되었다. 即, 이 時期에서는 國產材가 價格形成의 主導權을 쥐고 있었으니까 이때의 木材價格政策의 特徵은 “國產材 主導型의 價格形成”이라고 하겠다.

⑤ 外材輸入의 本格化 以后의 價格政策

이 時期는 昭和 三十六年 以後의 外材輸入이 本格化한 時期니까 木材의 總供給曲線 $< S$ 는 右側으로 크게 移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時期는 木材價格이 外材輸入에 의해서 左右되는 總需・給曲線 $< D$ 와 $< S'$ 로 一方的決定이 되는때니 만치 外材가 價格形成의 主導權을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時期의 木材價格政策의 特徵은 “外材 主導型의 價格形成”이라고 할 수 있으며 現狀이 바로 이에 屬합니다.

⑥ 今後 있어야 할 木材價格政策

이와같이, 在庫供給에 있어서는 外材輸入의 有無에 따라서 그 價格形成의 主體가 國產材도 되고 外材도 되고 합니다. 即, 여기서 極言을 용서한다면 在庫供給에 있어서는 外材輸入의 有無에 따라서 林政의 主導權이 그 나라의 內外로 왔다갔다하는 結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今後의 木材價格形成에 있어서 바람직한 方向은 現在 既히 外材輸入에 依해서 右側으로 너무 크게 移動해 있는 總供給曲線 $< S'$ 를 國內林業의 再生產이 可能한 水準까지 되끌고 와서 그以後는 그 水準에서 堅持하여 林政의 主導權을 다시 찾아서 내손에 쥐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點이야말로 今後 日本의 林政에 주어진 最大的 課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⑦ 木材需要의 開發政策

「林業의 流通, 消費政策」中 最後의 政策이 「木材需要의 開發政策」입니다. 나의 生覺으로는 伐木나 低質小經木의 高度利用은 勿論이지만 今後에 있어서는 石油製品의 代替品 開發 等 画期的인 需要開發이 必要합니다.

石油와는 달라서 木材는 再生產이 可能한 資源이니까 이 分野의 需要開發이야말로 우리나라 林業에 黑은 來日을 約束할 수 있는것이 될 것입니다.

(3) 構造・分配政策

여기서 「構造・分配政策」이라 함은 林業의 經營構造를 어떻게 改善하는가, 또 所得分配를 어떻게 適正한 것으로 하는가 하는 政策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時間關係上 그 中에서 「經營構造의 改善政策」에 對해서만 말하기로 하는데 이 政策은 한마디로 말해서 經營의 生產要素인 土地, 勞動, 資本의 最適再編成에 依한 規模와 效率의 追求政策에 關한 것입니다. 即, 내가 말하는 「社會的協業・分業政策」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定義한다면 「社會的協業・分業이란 個個의 經營者에 의한 生產要素의 個別的 所有내지는 利用에 의해서 생기는 非合理性, 非效率性을 排除하여 集團化, 共同化에 依한 生產要素의 合理的, 效率의 所有와 利用을 通하여 經營利益을 엄청나게 增加하는 것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個個의 經營者에 依해서 各己 따로 所有되고 利用되고 있는 土地, 勞動, 資本을 集團化, 共同化에 依해서 合理的, 效率의 으로 再編成해 가지고 經營收益을 增加하고자 圖謀하는 일입니다.

故로 가장 簡潔하게는 「社會的協業・分業이란 個別經營의 生產要素의 合理的, 效率의 共同所有내지는 共同利用에 依하여 規模와 效率에 依한 利益의追求를 圖謀하는 것」이라고 고쳐서 定義할 수 있겠지요. 이 때 “規模”에 의한 利益의追求政策이 社會的協業政策이고 “efficiency”에 依한 利益의追求政策이 社會的分業政策입니다. 이것을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해 봅시다.

① 社會的協業政策

社會的協業政策이란 個個의 經營者가 自身의 所有인 生產要素를 내가 지고 서로 交換해서 그것을 共同으로 利用하는 共同化 政策인 것이다. 即, 學問적으로 말한다면 「生產要素의 個別經營間에서의 組織化政策」이 社會的協業政策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協業에는 두 가지 方向이 있는데 그中 하나는 生產要素의 所有權을 保有한 채 共同化하는 것 即, 生產要素의 共同利用에만 그치는

共同化인계 이것은一般的으로作業組織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 이에該當합니다. 둘째로,는所有權까지도共同화하는方向即, 生產要素의共同所有,共同利用에 의한共同화입니다.一般的으로協業經營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 이에該當합니다.

② 社會的分業政策

다음 이것은社會的分業政策인데 이것은個個人의經營者가自身이所有한生產要素를森林組合과 같은外部의專門經營體에委託하여再編成해받아가지고efficiency를通过으로써利益을높이기위한共同化政策이다.即,生Production要素의所有權은個別經營人이保有한재利用權과經營權을分離하여外部의專門經營에委託하고이外部經營에依하여各個別經營의生產要素를가장合理的으로再編成하여efficiency에의한interest의追求를指向하는共同化政策입니다.一般的으로委託經營이라고불리우는것은이에該當합니다.

이와같이經營interest의增大를위한生產要素의社會的인組織化的方向은協業과分業의두가지로나누어서生覺할수있는데나의見解로서는林業에서는理論上社會的協業보다는社會的分業인等의大体로더適合한것입니다.그理由를説明한다면첫째로,林業에서는林野의所有構造가私有公有,國有等全然異質의經營形態로되어있어서外部經營에生產要素의利用權과經營權을委託하는社會的分業은可能하지만그生產要素를共有해서共同利用하는社會的協業은不可能한것이기때문입니다.둘째理由로는,林野의利用構造가林種이나林相에따라서全然 다른異質의인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社會的分業은可能해도社會的協業은困難한形便이기때문입니다.그다음셋째번理由로는,林野의分布構造가매우小規模,分散의이니까分業은可能해도協業은困難합니다.

以上의理由로보아서나는林業의構造改善政策의中心은社會的協業보다는社會的分業에두는것이當然한理致라고生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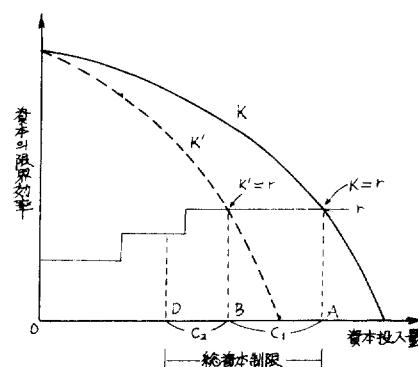
(4) 財政·金融政策

以上에서林業의經濟政策中機能別經濟政策에對하여私見을밝혀왔습니다.그러나이들諸政策을實行에옮기려면무엇보다도資本이必要합니다.그런데遺憾스럽게도林業에는資本이들

여가기어려운決定的인理由가있는것입니다.이것을“카버”하는것이다음말씀드리려고하는手段別經濟政策으로서의「財政·金融政策」인것입니다.

그러나여기서이政策의具體的內容에들어가기前에林業에는왜資本導入이困難한가에對한理由를理論적으로解明해둘必要가있다.다음그림圖4를보아주세요.

圖4 林業의資本制限



K:事後으로定해진자본의限界効率曲線

K':事前에予想되는자본의限界効率曲線

r:利子率

C₁:內的資本制限

C₂:外的資本制限

먼저圖4에對한學術用語를説明해봅시다.
「資本의限界効率」이란用語가있는데이것은資本의一單位當投資効率을말하는것으로써嚴格히따진다면資本의매작은小單位를限界單位라하는데이資本의限界單位를어떤產業에차례로投入해나간다면그때맨처음부터投入한限界單位일수록그生產efficiency는높고,나중이될수록生產efficiency는低下되는데이樣狀을나타낸것이資本의限界効率曲線K인데이K曲線은右下曲線으로그려진다.그런데이때이K曲線의크기가問題인데例를들어서工業과같이生產期間이짧은產業에서는그投資efficiency는事前에거의正確하게豫側이되니까事前에豫測한資本의限界効率과事後에定해진資本의限界効率과는거의一致된다.

이에 對하여 林業과 같이 生產이 몇十年씩 걸리는 超長期的 產業에서는 事前에豫測되는 資本의 限界效率 K' 는 事後에 定해지는 資本의 限界效率 K 보다는 훨씬 얕게 評價됩니다. 그理由는 몇十年이라는 긴 生產期間 동안에는 利子率이나 木材價格 그리고 需要樹種이나 外材輸入量 等에 있어서 큰 變動이豫想되니까 이와같은 不確實性에 該當되는것 만큼 事前의豫測의 限界效率曲線 K' 는 事後의 限界效率曲線 K 보다 얕게 評價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便 資本이란 무엇을 基準으로 어느만큼 投入되느냐 하면 一般產業에서는 利子率을 基準으로 해서 該當產業의 資本의 限界效率 K 가 利子率 r 와 함께 되는점 A 까지 投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銀行에 預金한 것과 같은 것임으로 普通이 利子率 r 을 基準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林業과 같이豫測되는 資本의 限界效率이 매우 얕은 產業에서의 資本은 그 얕은豫想의 資本 限界效率曲線 K' 를 對象으로 그것이 利子率 r 와 함께 되는점 B 까지밖에 投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即, 一般產業에서는 事後의 資本의 限界效率曲線 K 와 利子率 r 이 같게 되는點 A 까지 投資될 것인데 比하여 林業에서는 B點 까지밖에 投入되지 않는다는 說明입니다. 이것은 林業의 宿命이라고 할 수 있는 超長期生產에 在內한 不確實性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林業에 在內하는 資本制限을 「林業의 内的資本制限」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합니다. 圖4의 C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林業의 資本制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不確實性以外의 外의要因으로도 制限됩니다. 例를 들면 技術革新의 困難性이거나 또는 資本回轉의 緩慢性 等도 資本制限의 外의要因이 되는 것인즉, 이것을 「林業의 外의資本制限」이라고 부르며 圖4의 C₂가 그것에 該當됩니다.

이와같이 林業에서는 不幸하게도 内의 外의總 資本制限 (C₁+C₂)에 依해서 他產業은 A點까지 投資되는 것이 겨우 D點까지만 投資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러한 林業의 宿命의 資本制限을 “카바”하는 것이 다름아닌 國家豫算으로 하는 林業財政이어야 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遺憾이니마 우리나라의 林業豫算은 總 國家豫算의 겨우 0.7%에 不過한 實情입니다. 國土의 70% 가까이를 占有한 林野, 그리고 거기서 나는 經濟的, 公益的兩面에 있

어서의 有形, 無形의 無窮한 貢獻을 하고 있는 林業에 對한 國家豫算이 不過 0.7%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것을 正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國家豫算이 이지경이고 보면 一般民間資金이 이에 導入되지 못하고 있는 現狀은 오히려 當然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 모든 障害를 克服해서 林業에의 資本導入을 畏하려면, 國家財政으로 할 수 있는 制度, 金融의 強化, 擴充은勿論 共同組織에 依한 原資도 만들고 兼해서 受信力を 높여서 民間資本의 導入을 容易하게 할 수 있는 諸般施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社會的協業, 分業體로서의 森林組合이 그 組合金融을 通해서 林業에의 資本導入에 はん役割을 擔當해야 될 것이라고 고개 挽待하여야 한 것입니다.

— 2. 林業의 公益政策 —

以上에서 概約的인 林業의 經濟政策에 對한 새로운 私論을 展開했는데 이를 諸政策의 實施로 말미암아 林業所得이 增大되고 林業人の 社會的, 經濟的地位가 向上하여 後繼者도 安定하게 なれば 林業의 再生產도 可能해질 것입니다. 原來 經濟政策의 目的이란 어디까지나 “物質”的 豊饒을 追求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未來의 새 森林政策에 있어서는 物質의 豊饒에 그치지 않고 “마음”的 豊饒도 同時に追求하는 政策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政策을 「林業의 公益政策」이라 稱하며 이에 對하여 說明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政策을 定義한다면 「林業의 公益政策이란 森林資源의 保續, 培養으로 生態系를 維持하여 綠色의 效用을 通한 情緒, 教化, 文化, 生活環境 等의 向上改善을 畏하여 公益確保에 寄與할 수 있게 하기 为한 施策이다」라고 뜻이 이합니다.

따라서 이 政策은 다음 두가지의 公益政策이 있다고 볼니다.

(1) 公的 公益政策

그 첫째는 “公的 公益政策”입니다. 이 政策은 法的規制에 依하여 森林의 公益機能을 確保하고자 하는 施策입니다. 現行의 保安林制度가 바로 이에 該當됩니다만 나는 그 外에도 “公益林施業計劃制度”的 新設을 提唱하고 있습니다. 이 制度는 現行의 普通林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 「森林施業計劃制度」

에 對應하는 公益林制度로서 同一한 普通林을 對象으로 하여 그들 森林所有者에게 萬 · 그들이 希望한다면 公益林으로서의 施業目的에 따라서 “公益的施業計劃”을 自主的으로樹立하게 해서 이를 公的規制로서 遵守하게 하는 制度입니다.

이 때 그 代價로서 確保된 公益便益에相當하는 金額을 그 森林所有者에게 還元해 준다는 方法을 取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私的 公益政策

둘째는 “私的公益政策”입니다. 이 政策은 法的協力에 依해서 森林의 公益機能을 確保하고자 하는 施策입니다. 本 政策에 關하여는 다음 두가지 制度를 生覺할 수 있습니다.

① 公益便益分収林制度

그 첫째는, “公益便益分収林制度”입니다. 이 制度는 現行의 普通林을 對象으로 한 分収林 制度에 對應하는 公益林制度인데 例를 듣다면 個人所有의 山林을 森林組合과 같은 經營受託体가 借用해서 이에 適當한 施業을 해서 “레크리에이션”等의 公益的方向에 利用하고 그 結果 얻어진 公益便益의相當額을 個人과 受託体가 分収하는 制度입니다.

② 公益便益徵収林制度

둘째는 “公益便益徵収林制度”입니다. 이 制度는 普通林의 所有者가 自己의 森林에서 經濟便益을 追求하는 同時に 公益便益도追求하고자 할 때 公的機關이 이에 協力해서 그 公益便益에相當하는 額을 人山料나 利用料金의 形式으로 徵収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制度입니다.

以上에서 새로운 形態의 公益政策에 對하여 私見을 말씀했습니다만 要컨대 나는 森林所有者가 自身의 山林을 經濟林으로 利用하거나 間에 그게 對應할만한 利益이 얻어진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며 따라서 그렇게 되기 爲한 새로운 길이 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即, 林木를 伐採해서 팔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生覺은 物質보다는 心的豐饒을追求하는 未來에 다가올 情報社會에서는 通하지 않는 낡은 生覺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現在의 經濟機構속에서는 이러한 生覺은 오히려 通用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經濟機構는 理論上 決코 古代의 物物交換經濟의 領域을 한발자욱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單只 거기에는 貨幣라하는 매우 便利한 媒介物을 考察해 가지고 古代에 하던 物物交換을 손쉽게 해준 데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나 現下와 같은 經濟機構下에서는 形體나 重積을 가진 物件이 아니고서는 貨幣的 價值를 종체로 認定하려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即, 物物交換經濟에 있어서는 有形財가 아니면, 市場性이 없다고 해서 그 價值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有形財가 아니라면, 그것에는 價值이 없어서 空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空氣나 아름다운 山의 景致와 그 緑色 等은 거기에는 無限한 價值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無形財인 限, 그 貨幣的 價值는 零입니다.

이點이 바로 現代經濟機構의 決定의 欠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生覺해야 할 것은, 이러한 無形의 마음의 豊饒를追求하는 情報社會에서는 이러한 無形財의 價值야말로 더욱 important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無形財에 對한 貨幣價值를 將次 어떻게 評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次代의 經濟學의 最大課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부연한다면, 이러한 經濟學을 「情報經濟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森林에 關해서 具體적으로 말한다면, 森林은 外部에 對해서 여러가지 無形의 効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森林의 外部効用 또는, 外部經濟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外部 効用을 어떠한 方法으로 그 貨幣價值을 評價해서 그것을 金額으로 换算하여 森林所有者에게 還元해 주느냐 하는 問題는 새로운 次代의 森林 政策에 있어서 最大的課題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 3. 林業의 公益政策 —

以上에서 나는 林業의 經濟政策와 公益政策과를 따로 따로追求해 보았지만 이를 兩者를 나누어서追求하는 限, 거기에는 반드시 森林의 經濟, 公益兩機能의 確保를 爲해서 二律背反性이 生기게됩니다. 그래서 이 두政策을 잘 調和시키려면 第三의 政策이 必要하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提唱하는 “共益政策”입니다. 仔細히 說明한다면 經濟便益과 公益便益의 兩便益을 가장 適切히調整한다는 뜻에서 “經濟 公益便益調整政策”이라고 불리도 좋고, 또 私益과 公益을 가장 適切히 調

整한다는 뜻에서 “私益 公益調整政策”이라고 불려도 좋은데, 여기서 나의 이 共益政策의 具体策으로 圖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개의 새로운 政策을 生覺해보았는데, 于先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圖5를 보는 方法부터 說明해두고자 합니다.

먼저, 同圖의 橫軸 이것은 森林施業의 公益的施業規制의 程度를 表示한 것인데 施業 F1은 公益的施業規制가 全혀 없는 純經濟施業을 그리고 反對로 F2는 公益的施業規制가 가장 強한 純公益施業을 각각 表示한 것입니다. 一便, 縱軸은 橫軸의 公益的施業規制에 따라서 經濟便益이나 公益便益 그리고 施業費用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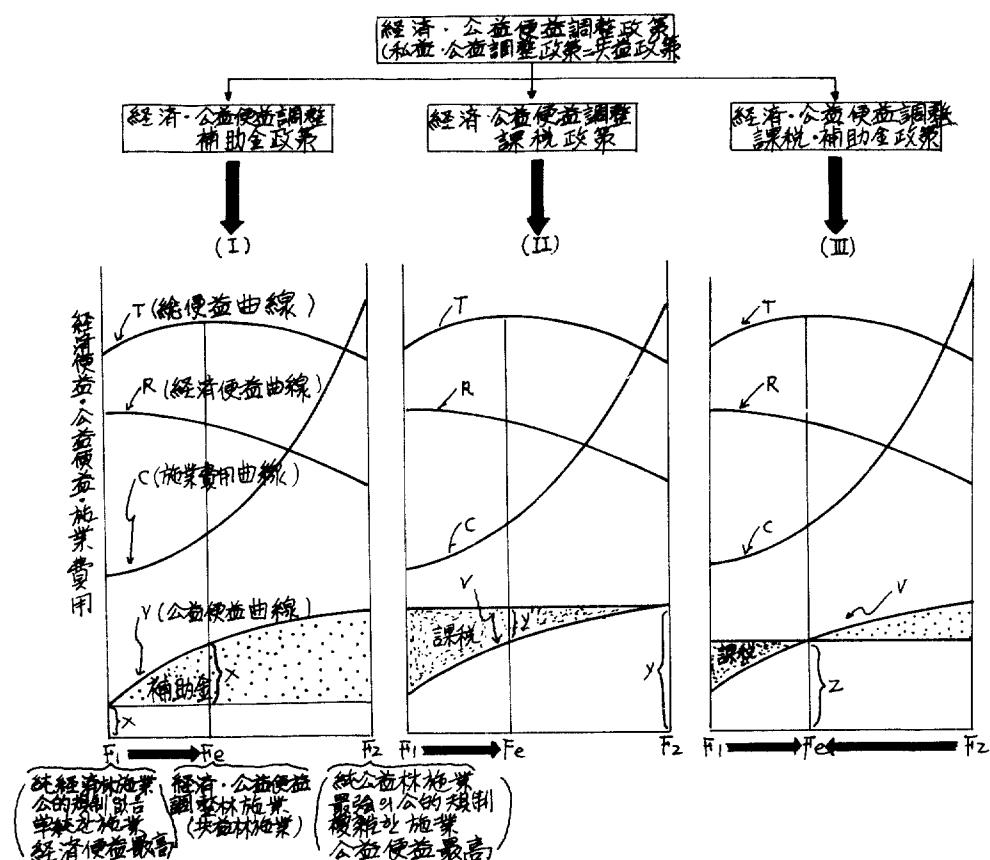
따라서 施業을 公益的規制가 全혀 없는 F1을 取하면 그때의 經濟便益 R는 最高가 되는 반면에 公益便益 V는 最低가 되고 反對로 施業을 公益的規制가 가장 強한 F2를 取하면 그때의 經濟便益 R은

最低가 되고, 公益便益 V는 最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經濟便益曲線 R는 右側으로 下降하고 公益便益曲線 V는 右側으로 上昇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兩便益을 合計한 (R + V)는 總便益曲線 T로 表示됩니다. 한편, 이때 施業費用曲線을 본다면 公益的規制가 全혀 없는 單純한 施業 F1 일 때에는 最低가 되고, 公益的規制가 가장 強하고,複雜한 施業 F2 일 때 最高가 되니까 C曲線 모양으로 右側으로 上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한 總便益 T에서 이 施業費用 C를 빼고 난 (T - C) 가 即, 總純便益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R, V, T, C의 關係에서 「森林所有者個人이 自己의 經濟純便益을 最大로 하기 為한 施業을 擇했을 때에 社會全体가 받는 總純便益도 最大가 된다」라고 하는 重要한 識見이 이 私論으로서 立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施

圖5 林業의 經濟·公益便益調整政策



業이야말로 森林의 經濟, 公益兩機能을 가장 適切하게 調和할 수 있는 “最適施業”인 것입니다. 共益政策의 “目標施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圖5의 施業 Fe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目標施業 Fe에로의 政策誘導야말로 “共益政策”이 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以下에 이 共益政策의 内容에 對해서 生覺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共益便益調整補助政策

좀더 詳細하게는 “經濟·公益便益調整補助金政策”의 뜻인데, 이것은 森林所有者的 施業을 먼저 說明한 目標施業 Fe까지 政策誘導하기 為한 補助金政策이다. 圖5의 (1)를 봅시다.

여기서 이 政策은 “万… 아무 公益的施業規制도 加하지 않는다면” 森林所有者 個人은 自然純經濟林施業을 F1을 指하게 될 것인가? 이 때의 公益便益 X를 基準 公益便益으로 하자. 이때 F1보다 強한 公益的施業規制를 課해 받는 森林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基準公益便益을 超越한 公益便益이生기게 되는데, 그 相費額을 補助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施業費用이 더드는 이 公益便益을 為한 施業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인 즉, 一般森林所有者 들로하여금 그 施業을 目標施業 Fe로 誘導하려면 補助金政策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目的의達成을 為하여는 X'까지의 補助金을 支給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共益便益調整課稅政策

이것은 먼저 말한 補助金政策과는 正反對便에서 生覺하는 政策으로 좀더 풀어 말한다면 “經濟·公益便益調整課稅政策”인데 森林所有者の 施業을 目標施業 Fe로, 政策誘導하기 為한 課稅政策인 것입니다. 圖5의 (2)를 봅주십시오. 이 政策이 生覺하는 것은 純公益林施業 F2以外의 施業은 全部 그 어느 것이나, 公益便益을 減少시키고 있는 것인니까 F2 일 때의 公益便益 y를 基準 公益便益으로 잡고서 F2보다 弱한 公益施業을 指한 森林所有者에 對해서는 이 公益便益 y보다 不足한 公益便益에相當하는 額을 課稅함으로서 森林所有者の 施業을 目標施業 Fe 까지 誘導하는 方法입니다. 이때 y'까지의 課稅에 依하여 목적을 達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共益便益調整課稅·補助金政策

좀더 詳細하는 “經濟·公益便益調整課稅·補助金政策”을 말하는 것으로써, 森林所有者の 施業을

目標施業 Fe로 政策誘導하기 為한 課稅와 補助金의併用政策인 것이다. 그러니까 前二者의 中間政策이라고나 할까 하나의 折衷的 政策인데, 이것은 圖5 (III)에서 보아 주시요.

이 政策에서는, 처음부터 目標施業 Fe에 為한 公益便益 Z를 基準 公益便益으로 잡아 놓고 Fe보다 弱한 公益便益밖에 하지 않고 있는 森林所有者에 對해서는 이 基準公益便益에 未達하는 公益便益에相當額을 課稅하고 그 反對로 별씨 既往에 Fe 보다 強한 公益施業이 課해져 있어서 Fe程度의 施業이 되어 있거나 그 以上의 것이 不必要한 狀態일 때에 그 森林所有者에 對하여 基準公益便益을 超過하는 公益便益에相當하는 從前에 支給해온 補助金을 中斷함으로써, 모든 森林所有者로 하여금 그 施業을 目標施業 Fe 까지만 誘導하고자 하는 方法입니다.

IV 結 言

이렇게 꽤 急히 서둘러서 이야기를 展開해왔습니다만, 끝으로 그 要點을 간추려서 말씀해두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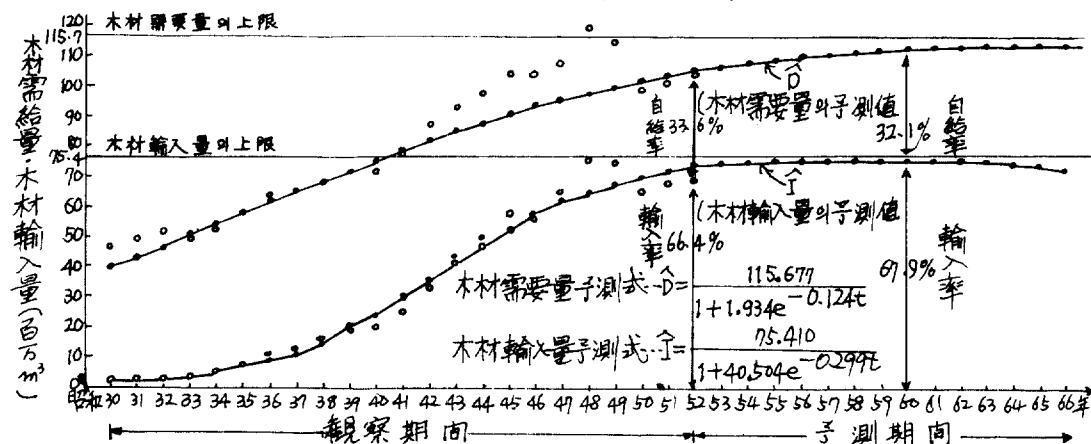
第一、 새로운 森林政策은 社會進化에 따라서 物心兩面에 그 豊饒를 가져다 주는데貢獻할 수 있는 未來指向型의 政策이어야 하며 “새로운 森林政策의 理念” 또한 그 方面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明白히 提示했습니다.

第二、 經濟政策에 關해서 우리나라 林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經濟問題의 理論的 解明과 그것을 基礎로 한 여러가지 政策提案을 했습니다. 그中에서도 現下, 特히 重要한 政策課題로 되어 있는 木林의 輸入問題에 關해서는 꽤 많은 時間을 消費했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 參考로 最近 내가 推定한 우리나라 木材의 總需要量과 木材輸入量에 關한豫測値을 圖6에 揭載해 두겠습니다.

이豫測에 있어서 그 觀察期間內에 잡은 “대-타”中, 第一次 石油波動 때 큰混亂이 있었음으로 보다正確을 期하려면 앞으로 數年間의 安定된 觀察 “대-타”가 더있어야 하겠는데 多幸히 本豫測은 그 精度가 꽤 높은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에 敢히 이에 揭載해 둡니다.

이 圖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于先 우리나라의 木材年間總需要量의 上限은 一億一千六百万 立方m로豫測되고 昭和七十年頭에는 그 限界에 到達하

図6 日本의木材需要量과外材輸入量의予測



리라 生覺됩니다. 한便, 外材의 年輸入量은 昭和六十年頭에 그 上限인 七千五百万立万m에 達하고 그時點에서 外材輸入率은 約68%라고豫測됩니다. 따라서 國產材의 自給率은 約 32%가 되는데 이時點을 지나면 國產材가 徐徐히 市場에 供給되게 될 것인니까 外材의 輸入量은 漸減해 갈 것입니다.

第三은 公益政策에 關한 것이 었는데 여기서는 現行의 經濟機構의 矛盾을 말했고 이를 克服하기 爲한 몇가지의 果敢하고도 新로운 政策 提案을 했습니다. 要는 林木을 伐採해서 팔지 않아도 森林의 公益價值의 販賣만으로도 生活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提唱했습니다.

第四는 共益政策인데, 이런 政策은 現行 林政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政策이니까 그 全部가 新로운 政策 提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特히 留意해 두어야 할 點은 只今부터의 新로운 政策은 그 모든 것이 科學的 根據에 의한 “理論的 政策”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點에 關해서 더 以上 이 자리에서 說明할 時間의 余裕는 없지만 나는 이번 春季學會에서 全國

의 森林을 科學的인 根據下에 純經濟林, 純公益林 그리고 經濟·公益調整林으로 각各 最適施業區分하는 새 理論을 發表했습니다. 곧 學術誌에도 公表될 豫定입니다만 이 理論으로 가장 適切한 施業區分이 된 純經濟林에 對해서는 먼저 말한 經濟政策이 그리고 純公益林에 對해서는 公益政策이 각各 適用되게 됩니다.

이때 이들 새 諸政策의 推進母体는 森林組合乃至는 이에 類似한 社會的 分業, 協業體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뜻에서新生森林組合이야말로 새로운 日本林業을 등에 업고 나아갈 日本林業再生의 旗手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 使命은 더욱 重要해 질 것입니다.

더 詳細한 것은 나의 著書『森林政策學』(養賢堂發行)을 參照해 주시기로 하고 끝으로 本講演을 끝마치는데 있어서 나는 將次 展開될 새 森林政策의 創造를 為하여 거기에 이르는데 있어서의 困難함을 찾기에 앞서서 거기에 이르는 可能性을 찾자고, 외치고 싶습니다.